

# 광주광역시 서구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증개정 조례안

## 1. 개정사유

- 기존 자연지형을 중심으로 획정된 행정구역 경계가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편익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시 승인을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
- 조정규모
  - 쌍촌동에서 유촌동으로 편입 : 18필지 12,093m<sup>2</sup>
  - 내방동에서 광천동으로 편입 : 6필지 587m<sup>2</sup>
  - 화정동에서 내방동으로 편입 : 7필지 14,439m<sup>2</sup>
  - 내방동에서 화정동으로 편입 : 14필지 3,626m<sup>2</sup>
  - 광천동에서 농성동으로 편입 : 9필지 6,536m<sup>2</sup>
  - 농성동에서 광천동으로 편입 : 5필지 178m<sup>2</sup>
  - 화정동에서 쌍촌동으로 편입 : 18필지 2,795m<sup>2</sup>

## 3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 3항 및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3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요청을 제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(임시회)에서 의결하고, 광주광역시장이 제1999-2호 (1999년 4월 16일)로 승인한 법정동간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정조례안과 같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.